

예산총칙

(2022년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팀 예산)

제1조(목적) 2022년 (사)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 예산은 사업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사)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2년도 예산은 당해의 수입과 지출로 한다.

제3조(예산의 규모) (사)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2년도 예산 세입·세출 예산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장애인활동지원팀 세입·세출 예산	
세입	일금 육십칠억육천육백육십구만일천팔백오십이원정 (₩6,766,691,852)
세출	일금 육십칠억육천육백육십구만일천팔백오십이원정 (₩6,766,691,852)

제4조(예산의 내역)

①세입예산은 사업수입, 잡수입, 이월금으로 한다.

세입액	
사업수입	일금 육십사억일천팔백팔십구만육천원정 (₩6,418,896,000)
잡수입	일금 삼천일십오만원정 (₩30,150,000)
이월금	일금 삼억일천칠백육십사만오천팔백오십이원정 (₩317,645,852)

②세출예산은 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예비비로 한다.

세출액	
운영비	일금 육십이억이천오백육십삼만사천사백이십칠원정 (₩6,225,634,427)
사업비	일금 일억사천구백팔십만원정 (₩149,800,000)
재산조성비	일금 삼억칠천육백원정 (₩376,000,000)
예비비	일금 이천만이십오만칠천사백이십오원정 (₩20,257,425)

③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세입·세출 세부 명세는 첨부 「2022년 회계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과 같다.

제5조(예산의 전용) 세출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관·항·목 과목 간에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①동일 항내 목간의 전용은 기관장 승인을 거쳐 전용이 가능하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법인 운영위원회 의 결을 거쳐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관내 항간의 전용은 법인 운영위원회의 의 결을 거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는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차입) 사업수입의 일시부족발생 시 협회장의 결재에 의거하여 (사)대한안마사협회에서 일시 차입 할 수 있다. (단, 일시부족의 해소 시 즉시 차입금을 상환한다.)

제7조(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기타 지원금 등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